산업통상자원부 http://www.motie.go.kr	보 도 자 료	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뉴딜

2021년 9월 7일(화)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(인터넷, 방송, 통신은 9.7.(화) 오전 11시 이후 보도 가능)

배포일시	2021. 9. 6.(월)	담당부서	경제자유구역기획단 정책기획팀
담당과장	채규남 과장(044-203-4610)	담 당 자	유상열 사무관(044-203-4612)

경제자유구역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, 9.16일부터 시행

- 비수도권 첨단·핵심전략산업 투자 기업에 조성원가 이하 분양, 임대료 감면
- 대외지급 한도 상향(2→10만 달러), 경제자유구역 시설용지에 "복합용지" 추가
- 경제자유구역별 핵심전략산업 선정·고시(10월말) 및 발전계획 수립(12월)

□ 산업통상자원부(장관 문승욱)는 **핵심전략산업 선정절차와 그 외 시행에 필요한 사항**을 규정한 **「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」 일부개정령안**이 9월 7일(화)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힘

< 경제자유구역법('21.6.15 개정, 9.16 시행) 주요내용 >

▲ **(핵심전략산업 선정)** 경자구역별 특성·여건을 고려, 산업발전·파급효과가 큰 산업
▲ **(발전계획 수립)** 핵심전략산업을 중심으로 경자구역별 발전계획 5년 주기 수립
▲ **(입지 혜택 제공)** 비수도권 경자구역 內 첨단·핵심전략산업 투자기업에 ①조성원가 이하 분양, ②수의계약 허용, ③임대료 감면, ④전용용지 입주, ⑤50년간 장기임대 허용, ⑥영구시설물 축조 허용 등 입지혜택 제공
▲ **(경자청 역할)** 발전계획 수립, 신산업·핵심전략산업 육성, 규제발굴·개선 등

□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① 입지혜택에 확대된 공급대상 반영, ② 경영활동·개발규제 완화, ③핵심전략산업의 선정절차 신설, ④ 경제자유구역청 업무 확대에 따른 규정 보완 등임

① 입지혜택 공급 대상 확대

- **조성원가 이하로 부지를 공급할 수 있는 대상**에 기존 외국인투자 기업에서 **비수도권 소재 경제자유구역**에 입주하는 **핵심전략산업 투자 기업, 첨단기술·제품 투자 기업, 국내복귀기업 추가**

- **국·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대상**에 기존 외국인투자기업, 국내복귀기업에서 **비수도권 소재 경제자유구역**에 입주하는 **핵심전략산업 투자 기업, 첨단기술·제품 투자 기업과 추가**

② **경영활동·개발규제 완화**

- 경제자유구역에서 경상거래에 따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, 외국통화 등 **대외지급수단으로 신고없이 직접 지급할 수 있는 경상거래 규모의 한도**를 **2만 달러에서 10만 달러로 상향**

- 산업의 고도화·첨단화로 산업·연구·주거·관광 등 **다양한 분야의 융·복합과 신산업·서비스 활성화가 예상**됨에 따라 **용도가 다른 2개 이상의 시설**을 **하나의 용지에 설치**할 수 있는 **"복합용지"를 추가**

③ **핵심전략산업의 선정 절차 신설**

- **경제자유구역청장**이 핵심전략산업 선정을 요청하려는 경우, 핵심전략산업의 개요 및 현황, 선정 필요성이 포함된 **선정요청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**

- **산업통상자원부장관**은 **전문적·기술적 검토**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요청 대상 산업분야와 관련된 전문가로 **15명 이내 핵심전략산업선정평가단을 구성·운영**

④ **경제자유구역청의 업무 확대에 따른 관련 규정 보완**

- **신산업과 기업의 육성·지원, 규제혁신과제 발굴 등이 경제자유구역청의 업무에 추가**됨에 따라 **경제자유구역청장 임명 시 고려사항*, 파견인력 요청범위**** 등에 반영

* ① 경제자유구역 업무 담당, ② 도시, 물류, 사회기반시설 개발, ③ 외투기업·자본유치 + **④ 신산업과 기업의 육성·지원 또는 규제혁신과제 발굴 등**

** 개발업무 + **신산업과 기업의 육성·지원 또는 규제혁신과제 발굴 등**

□ 정부는 「**경제자유구역 2.0, 2030 비전과 전략**」(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, '20.10월)의 **주요 내용을 담은 경제자유구역법과 동법 시행령이 9월 16일 시행**됨에 따라, 경제자유구역 2.0 주요과제를 차질없이 이행할 예정

○ 산업통상자원부는 **경제자유구역별 핵심전략산업 신청**을 받아, **핵심전략산업선정평가단 검토**와 **관계부처 협의,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·의결**을 거쳐 **핵심전략산업을 선정·고시**(10월말)

○ 경제자유구역청은 **핵심전략산업 유치현황, 여건분석, 육성·특화 계획, 향후 10년간 중점 추진과제** 등을 포함한 **발전계획을 수립*** 하여 **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**(12월말)

* 올해는 법 시행에 맞춰 금년말까지 수립, 향후 정부의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5년마다 수립·시행

○ 산업통상자원부는 **경제자유구역별 발전계획이 원활하게 추진**될 수 있도록 **경제자유구역청과 협의 및 지원 프로그램 마련**('22년~)

□ 안성일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은 "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국무회의 의결로 **경제자유구역 2.0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**되었다"고 평가하고,

○ "**경제자유구역 2.0 주요과제를 차질없이 수행**하여, 경제자유구역이 **핵심전략산업을 중심**으로 **新성장동력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**할 수 있도록 **지자체·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**해 나가겠다"고 밝힘

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 정책기획팀 유상열 사무관(☎ 044-203-4612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참고1 경제자유구역 개요

□ **(도입목적) 우리나라를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로 육성**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「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정('02.12월)

□ **(운영체계) 경제자유구역위원회**(위원장 : 산업부 장관), **경제자유구역기획단**(산업부), **9개 경제자유구역청**(지자체)을 통해 운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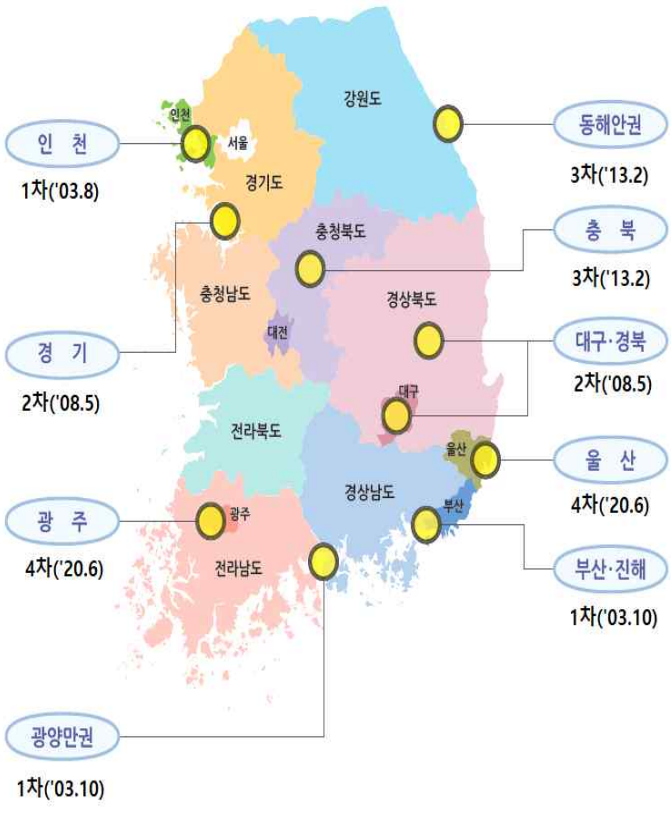
○ **(경자위) 산업부 장관을 위원장**으로 **13개 부처 차관** 및 위촉위원 10명 등 24명, 제도개선·개발계획·지정 등 **중요사항 심의·의결**

○ **(경자단) 산업부 소속기관**(단장 : 2급, 현원 39명), 경자위 운영·제도개선·외투유치·기반시설 구축 등 **경자구역 제도 총괄**

○ **(경자청) 시·도 공무원**으로 구성(청장 : 1급), 개발계획 수립·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·투자유치 등 **시·도로부터 위임받은 사무**

□ **(지정현황)** 동북아비즈니스 중심지 조성을 위해 4차에 걸쳐 **9개 구역**(총면적 275㎢, 99개 사업지구)의 **경제자유구역을 지정·운영** 중임

구 분		청장 직급	면 적	지구
1차 ('03)	인 천	1급	122.44㎢	32
	부산·진해	1급	51.07㎢	23
	광양만권	1급	59.60㎢	17
2차 ('08)	대구·경북	1급	18.46㎢	8
	경 기	1급	5.24㎢	3
3차 ('13)	동해안	1급	4.47㎢	5
	충 북	1급	4.96㎢	4
4차 ('20)	광 주	1급	4.37㎢	4
	울 산	1급	4.70㎢	3
합 계			275.31㎢	99



참고2 「경자구역 2.0, 2030 비전과 전략」('20.10.15 발표) 주요 내용

1 추진 배경

□ '03년 도입된 **경자구역이 글로벌 환경변화에 대응하고, 혁신성장의 거점으로 도약**하기 위해서는 **근본적 대책이 필요한 시점**

○ **개발·외투유치**에 더해 **혁신성장**으로 운영방향을 확대하는 **경자구역 2.0 추진**

2 그간의 성과 및 지원제도 평가

□ **(성과)** 개발률 90%로 개선('09년 대비 60.4%p↑), **입주기업 경제기여도 증가**

최근('16~'18) 경자구역 입주기업 관련 성과

△ (입주기업 수) 4,656개→5,761개, 연평균 11.2%↑ △ (매출) 71.1조원→102.6조원, 연평균 20.1%↑
△ (투자) 4.2조원→5.0조원, 연평균 8.7%↑ △ (고용) 13.2만명→16.7만명, 연평균 12.2%↑

□ **(지원제도 평가)** 정책대상이 **외투·유턴기업에 국한**, 개발 중심의 지원체계

○ **(인센티브)** 주요 경쟁국은 전략산업에 대해 **국내·외 기업 차별 없이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으나, 경자구역은 국내기업에 지원 없음**

* (대만) 바이오테크·제약 투자액 일부 5년간 법인세 공제 (싱가포르) 글로벌 선도산업 5~10년 면세

○ **(규제)** 인·허가 의제 등 개발 규제완화 중심, **신산업 규제혁신은 미흡**

* (경자구역 內 규제혁신 실적) 규제자유특구 21개 중 4개, 규제샌드박스 195건 중 1건

3 비전 및 주요 추진과제

비전	**혁신성장을 선도하는 글로벌 신산업 거점**
목표	▸ **국내·외 추가 투자유치 60조원** : ('20.1) 55조원 → ('30) 115조원 ▸ **입주기업 추가유치 4,000개** : ('20.1) 5,992개 → ('30) 10,000개 ▸ **신규 일자리 20만개 창출** : ('20.1) 21만명 → ('30) 41만명
추진 전략	❶ [운영방향] **개발·외투유치 + 혁신성장 중심** ❷ [인센티브] **외투·유턴 + 첨단·핵심전략산업 국내·외 기업** ❸ [규제혁신] **개발 중심 규제특례 + 신산업 투자 활성화 규제혁신**

1. 경자구역의 글로벌 신산업 발전기반 강화

◇ 핵심전략산업 선정 및 경자청별 발전계획 수립

□ **(핵심전략산업)** 지역별 특성·여건을 고려, **핵심전략산업 선정·고시**

□ **(발전계획)** 앵커기업 타겟팅 유치전략 등 **경자청별 발전계획 수립**

2. 첨단 · 핵심전략산업 중심으로 인센티브 운영

◇ 첨단투자지구 지정 추진 및 국내·외 기업에 인센티브 확대

□ (첨단투자지구) **첨단투자 수요가 있는 곳** 중심으로 지정 추진

* 경자구역 등 계획입지 일부를 지정, 추가 인센티브 제공(산집법 개정)

□ (입지) 외투·유턴에 제공하던 입지 혜택*을 **첨단·핵심전략산업에 확대**

* 수의계약 허용, 조성원가 이하 분양, 임대료 감면, 전용용지 공급 등(**비수도권**)

□ (보조금) **비수도권 경자구역**에 **지방투자보조금 지원 비율 우대**(2~10%p)

3. 신산업 투자 활성화 규제혁신 기반 마련

◇ 신산업 육성에 필요한 경자청의 규제혁신 업무 추진기반 마련

□ (규제혁신) 경자청 업무에 규제혁신 신산업 활성화 명시 등 **규제혁신 업무의 법적기반 마련**

□ (체계적 지원) **경자청 주도(Top-down)**로 신산업 규제·수요기업 발굴, 실증특례 컨설팅, 투자유치까지 체계적인 지원

* 다수 기업 공동 신청 과제 중심으로 발굴하고, 실증특례 지원

4. 혁신성장 지원 인프라 강화

◇ 입주기업 지원사업, 교육·연구기관 집적화 등 혁신지원 인프라 강화

□ (기업지원) 산학연 협의체 구축 등 **혁신성장 프로그램 신설**('21년 42억)

□ (교육기관) 3대 광역권에 **외국교육·연구기관 집적화 기반 조성**

* (수도권) 인천 송도 (남동권) 부산 명지지구 (남서권) 광양·광주 등 : (현재) 12개 → ('30) 26개

5. 경자구역 혁신 거버넌스 역량 강화

◇ 경자청·경자위 기능 강화를 통해 혁신성장 추진기반 구축

□ (경자청) **혁신성장**(규제혁신·기업지원 등) **중심**으로 조직과 기능을 개편* 하고, 전문성(개방형 직위·전문임기제) 및 청장 인사권을 강화**

* 업무비중 : (기존) 혁신성장 지원(5%), 행정·개발지원(75%), 투자유치 지원(20%)
→ (개선) 혁신성장 지원(25%), 행정·개발지원(50%), 투자유치 지원(25%)

** 민간전문가(임기제)(정원대비 비중) : ('19)87명(11.4%) → ('22)120명(15%) → ('25)160명(20%)

□ (경자위) 주요프로젝트 **애로사항 해결**, 분야별 전문위 운영